

#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희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6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이희원 의원(1명)  
찬성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옥,  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  
김태수, 김현재, 김혜영,  
박영한, 박춘선, 유만희,  
유정희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 
전병주, 채수지, 최민규,  
황철규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동 조례 내용 중 인용조항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인용 조문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인용조항 오기 사항 수정(안 제9조~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7호 부분 중 “제15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부분 중 “제2항제3호 · 제4호”를 “제2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 1. ~ 6. 생략 7. <u>제15조</u> 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. 생략	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제7조</u> 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~ ② 생략 ③ <u>제2항제3호 · 제4호</u> 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9조(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제2항제7호 부분 중 “제15조”를 “제7조”로 하고,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제3항 부분 중 “제2항제3호·제4호”를 “제2항”으로 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